##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6

발의연월일: 2020. 6. 12.

발 의 자:정일영·허종식·김교흥

이성만・최인호・조정식

윤관석・임종성・허 영

고용진 · 송영길 · 신동근

박용진 • 맹성규 • 홍영표

이재정 • 이타희 • 박 정

박상혁 • 유동수 • 윤호중

의원(2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자유구역 및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라 조성된 신도시 등에서는 개발에 따른 급격한 인구 유입과 학생급증에 따른 과대·과밀학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학교신설에 있어 공동주택 분양공고 후에 학교설립수요를 인정하는 정부의 경직된 심사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이어지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 공급 사업시행인가 단계부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 원회의 학교설립 산정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도 교육청으 로부터 이어져 왔으나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적절하게 주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지차단체는 학습자가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고려하여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설립의 산정근거에 있어 도시개발로 예정된 과밀학급의 개선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 학습자가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가 지역 간 균등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개발행위로 예정된 과밀학급 개선을 위한 적극적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1.2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
			무교육 학습자가 적절한 환경
			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급
			당 학생 수가 지역 간 균등하
			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개발행위로 예정된 과밀
			학급 개선을 위한 적극적 시책
			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